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523954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1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금융채 6개월 + 3.13%, 변제기 2024.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194,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24. 5. 8. 현재 소외 회사의 대여원리금 잔액은 214,271,294원(= 원금 206,404,247원 + 이자 7,867,0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19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여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희현